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51633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한국비닐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3. 15.

판결 선고2016. 4. 2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758,570원 및 그 중 86,418,11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4.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99,703,2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99,703,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한국비닐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한국비닐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2014. 12. 29. 접수 제895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1. 10. 29. 보증금액 78,300,000원, 보증기한 2002. 10.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과, ② 2003. 3. 5.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04. 3.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이후 보증조건 변경을 통하여 ① 보증금액 52,7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16., ② 보증금액 32,000,000원, 보증기한 2015. 2. 17.로 각 최종 변경되었다.

피고 A은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나. 우리은행은 2015. 2. 18. 피고 A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86,418,1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외에 추가보증료로 148,020원을 지출하였고, 법적절차비용 중 1,192,44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대위변제 당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4. 11. 21. 자신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14. 12. 29. 피고 한국비닐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1	집합건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537,000,000	감정평가
2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82,410,000	갑 제13호증
3	토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320,600	
4	토지	인천 서구 D	1,075,691,600	갑 제14호증
5	건물	위 지상 건물		
합계	1,896,422,200			

한편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1	중소기업은행	1,011,499,711	갑 제15호증
2	원고	84,700,000	갑 제5호증
3	서울보증보험	65,564,262	을 제3호증
4	신용보증기금	29,898,131	
5	현대캐피탈	46,437,155	을 제5호증
6	우리카드	11,781,852	을 제3호증
7	우리은행	116,300,000	갑 제16호증
8	주식회사 코스틸	329,291,118	을 제11호증
9	국민은행	277,600,000	을 제9호증
10	피고 한국비닐 주식회사	100,000,000	갑 제9호증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6,826,110	갑 제17호증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9,550,410	
합계	2,089,448,74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3, 5,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87,758,570원(= 대위변제금 86,418,110원 + 법적절차비용 1,192,440원 + 추가보증료 148,0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418,11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5. 13.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6.까지는 약정지연이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A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를 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이 피고 B, 한국비닐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해 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15. 5. 13.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당시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 이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04. 8. 19.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3. 22.자 같은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11. 30.자 같은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5. 3. 6.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은 244,000,000원(= 99,000,000원 + 95,000,000원 + 50,000,000원)인 사실, ②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는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2008. 4. 18.자 주식회사 코스틸 명의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5. 3. 6. 말소되었는데,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은 327,767,59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537,000,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가액으로 추인되고,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82,410,000원 및 201,320,6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사해행위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하였다가 말소된 위 주식회사 코스틸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피담보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별지 목록 제1항	537,000,000	200,000,000	130,859,018	406,140,982
별지 목록 제2항	82,410,000	200,000,000	20,082,107	62,327,893
별지 목록 제3항	201,320,600	200,000,000	49,058,875	152,261,725
합계	820,730,600	200,000,000	200,000,000	620,730,600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는 공동담보 가액 406,140,982원에서 선순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44,000,000원을 뺀, 162,140,982원의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3. 15.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99,703,209원(대위변제금 86,418,110원 + 추가보증료 148,020원 + 법적절차비용 1,192,440원 + 지연손해금 11,944,639원)이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령 이혼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때 피고 B이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나머지 2분의 1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 A과 피고 B이 이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피고 A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직장생활을 하여 다른 수입원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결국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는 위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62,140,98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9,703,209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99,703,2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703,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한국비닐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재훈

별지